

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31호 2001. 10. 4)

총무위원회
2001. 10. 22

1. 심사경과

- 가. 2001. 10. 10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1. 10. 10 총무위원회 회부
- 다. 2001. 10. 22 사천시의회 제5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상정

2. 제안설명 요지(시민정보과장 박명돈)

가. 제안이유

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상위법인 호적법 제13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과 중복으로 폐지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(1)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함.
 -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(종전조례 제3조 및 제5조제1항)
 -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과태료 면제(종전조례 제5조제2항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성호영)

- 현행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호적법에 의한 각종 신고를 법정기간내 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호적법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준치 불필요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: 없음